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동 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67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동현 강대호, 김경영, 김경우, 김상진, 김태호, 김호평,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송아량, 안광석, 오현정, 이광호,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전병주, 최 선,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중소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서울 시도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
- 서울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권익 향상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계획하며 관련 정책의 수립시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소셜벤처의 요건을 정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소셜벤처 확인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벤처”란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단체를 말한다.
2.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4. “사회성과”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성과를 말한다.
5.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셜벤처의 요건) ① 소셜벤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

② 제1항 이외에도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법인·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소셜벤처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4.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8조(소셜벤처의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셜벤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
 5. 그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셜벤처 공간, 회의장, 운영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발굴에 관한 사항
 4.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소셜벤처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소셜벤처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4. 소셜벤처 공간 지원
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

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소셜벤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선 구매 등 지원)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소셜벤처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벤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벤처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성과보상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하여 민간의 주도로 광역 및 자치구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소셜벤처 협의기구나 소셜벤처간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 협력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벤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셜벤처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4항, 제20조(국제협력 등 지원)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
- ※ 제19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지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협의기구 등의 규모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조문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20조(국제협력 등 지원)제2항은 소셜벤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현 시점에서는 선언적·권고적 조문에 해당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3항, 제13조(경영지원 등),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제15조(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의 사용),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는 서울시에서 예산 및 기금을 기 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3항은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2019.7월 현재 소셜벤처허브센터를 설치 및 위탁운영중이며, 소셜벤처허브센터에서 제13조(경영지원 등),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제15조(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의 사용)제1항, 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참고] 2019년 소셜벤처허브센터 민간위탁금 내역

내역		예산액(천원)	조례안 관련 조문
계		1,216,874	제12조제3항
인건비		190,803	
운영비		230,368	
소계		795,703	
사업비	사회혁신 창업가 발굴 및 성장지원	252,644	제15조제1항, 제16조
	소셜벤처 역량강화 지원 사업	170,814	제13조, 제15조제1항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95,302	제14조, 제15조제1항
	소셜벤처허브센터 공간 특화 지원 사업	142,932	제14조, 제15조제1항
	소셜벤처허브센터 대외협력 지원 사업	30,850	제15조제1항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획 사업	23,090	제15조제1항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 및 저변 확대	80,071	제15조제1항

- 제15조(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의 사용)제3항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위

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19.7월 현재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에 620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4항, 제20조(국제협력 등 지원)제1항

나. 전제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
- 소셜벤처지원위원회는 10명(시의원 1명, 담당 국장 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4회(정기 2회, 임시 2회) 개최
- 자치구 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은 기 설치된 2개 자치구(성동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대하여 5년간 연차적(2020~2022년은 5개소씩, 2023~2024년은 4개소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
- 국제협력은 연 1회 소셜벤처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추계기간 5년으로 함(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라. 방법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5,204,000천원(연평균 1,040,80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자치구 센터 설치비 지원 + 국제협력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비(제6조)	40,000	-	-	40,000	-	80,000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4,800	4,800	4,800	4,800	4,800	24,000
	자치구 센터 설치비 지원 (제12조제4항)	1,000,000	1,000,000	1,000,000	800,000	800,000	4,600,000
	국제협력(제20조제1항)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1,144,800	1,104,800	1,104,800	944,800	904,800	5,204,000
□ 총 비용(b-a)		1,144,800	1,104,800	1,104,800	944,800	904,800	5,204,000

4. 덧붙이는 의견 : 의견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4항, 제20조(국제협력 등 지원)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실태조사비 : 연간비용 40,000천원×2년(2020년, 2023년)=80,000천원
 - ※ 연간비용 : 소셜벤처 실태조사 유사사업인 2019.6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라장터에 공고한 ‘소셜벤처 활성화의 고용효과 연구 관련 기업 및 근로자 실태조사’ 예정가격 40,000천원 적용
 - ※ 횟수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3년 마다 수립하는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이므로 3년 간격(2020년, 2023년)으로 비용 발생
- 위원회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8명×연 4회×5년=24,000천원
 -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 지급인원 : 위원 10명 중 시의원(1명)과 담당 국장(1명)은 제외
- 자치구 센터 설치 지원금 : 지원금 200,000천원×23개 자치구=4,600,000천원
 - ※ 지원금 단가 : 2018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사업비로서 대문구에 지원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200,000천원 적용
 - ※ 설치지원 자치구 : 소셜벤처지원센터가 기 설치되어 있는 2개 자치구(성동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대하여 2020~2022년은 5개소씩, 2023~2024년은 4개소씩 설치 지원
- 국제협력 : 국제포럼 100,000천원×연 1회×5년=500,000천원
 - ※ 국제포럼 단가 : 소셜벤처 국제포럼 유사사업인 사회적경제담당관의 2019년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예산 100,000천원 적용